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2. 8. 6.

감 사 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결과 요약문

2012년 3월 13일 입찰을 집행한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12개』 구매·조달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감사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2012년 4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함.

- 2012년 3월 26일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사용할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12대의 확충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비수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기술하지 않았으며, 또한 기 보유분 4대를 미반영하는 등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 발주 및 구매담당 부서에서는 구매조달의 시급성 및 목적물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이에 상응하는 업무추진과 구매조달 계획을 변경해야하는 사유를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구매 목적물이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후인 4월 12일에 납품되어 구매조달의 합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발주부서에서는 위탁연구과제 수행 중 모방불법복제 의구심을 유발하는 자산의 임의 반출, 연구결과물(개발 및 시제품)의 평가 및 자산등재 미실시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위탁연구과제 수행 중 결과물의 사용처(목적)를 낙찰 업체에 알려 줌으로써 구매정보를 사전에 누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은 우리 원 소유의 연구결과물을 승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상품화하여 우리 원과 단가 32,500천원, 5대, 총 162,500천원의 물품공급계약을 2012년 3월 14일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12일 납품을 완료하였음. 이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이를 방치하는 등 연구결과물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결과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 사용하여 제작하고, 우리원과 동 제품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계약금액 162,500천원) 2012년 4월 12일 납품한 물품공급계약 건에 관하여 계약변경, 연구결과물의 평가 및 자산등재 미실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시정조치 할 것.
- 더불어 「연구결과물 임의사용 건에 대한 행정조치」, 「위탁연구 및 기술용역 관리 개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소통강화」 등을 후속조치 및 건의·개선사항으로 제시함.
- 관련자에게는 징계(3명), 경고(3명), 시정(2건) 등의 처분을 요구함.

-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반 구성	
4. 감사범위	
5. 관련 건의 추진 경과	
6. 감사실시 주요 진행경위	
II. 감사결과	3
1. 구매계획의 부적정	
2. 직무태만 및 업무 협조체제 미흡	
3. 구매계획 변경 불이행 및 보고의무 미준수	
4. 자산의 임의 반출 및 미등재	
5. 구매계획의 사전 누설	
6. 연구결과물 및 물품공급계약 진행 관리 부적정	
III. 개선 및 건의사항	7
1. 위탁연구 및 기술용역 관리 개선	
2.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소통강화	
IV. 후속조치	8
1. 감사결과 통보 및 유관기관 보고	
2. 연구결과물의 임의사용 등에 따른 행정 조치	
붙 임 : 처분요구서 1식	9

I. 감사실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 2012년 3월 26일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 방사능테러 방사능방호기술지원과 관련하여 행사장 출입자(보행자) 및 수화물 소지 불법 방사능물질 탐지를 위한 장비 12대의 확충 계획에 따라 2012년 3월 13일 입찰을 집행하였음.
- 위의 과정에서 2012년 3월 5일 입찰공고에서 입찰정보를 수집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마친, 미국의 FLIR사 국내 독점대리점인 ‘알에스아이’ 사는 투찰에 응하지 않고 2012년 3월 22일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음.
 -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 놓고 입찰공고 품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와 담합 혹은 부정당한 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 사용부서에서는 2011년 8월 18일 민원인이 대전 업체를 통해 납품한 FLIR사의 ‘DU303.1.NG’ 모델제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밀착 업체에 불법 유출시켜 모방 불법 복제케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0일 민원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민원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음.

2. 감사기간

- 당초 : 2012. 4. 16. ~ 4. 27.(2주간)
- 변경 : 2012. 4. 16. ~ 5. 31.
(연구진실성 · 윤리검증 일정을 반영하여 기간 변경)

3. 감사반 구성

- 감사부장 000(총괄), 감사팀장 000, 책임행정원 000

4. 감사범위

-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12개 구매 · 조달과 관련 일체의 업무
- 연구윤리 및 진실성 검증(KINS 수행 요청 / 연구관리담당 부서)

5. 관련 건의 추진 경과

- 2012. 2. 15. 기본결재 /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확충계획
 - * 수량 12개, 소요예산 420,000천원(35,000천원 × 12개)
- 2012. 2. 20. 수요부서 구매요구
- 2012. 2. 24. 자재팀 구매요구서 접수
- 2012. 3. 5. 입찰공고(조달시스템 공고, 직찰, 총액, 최저가 낙찰)
- 3. 13. 15:00 입찰등록(뉴케어메디컬시스템 등 3개 업체)
- 3. 13. 16:00 입찰 및 개찰(뉴케어메디컬시스템 등 2개업체)
 - ※ 민원제기 업체인 “알에스아이” 미응찰(투찰직전 퇴장)
- 2012. 3. 14. 계약체결
 - 계약기간 : 3. 14.~4. 12. /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 대표 000
 - 계약금액 : 390,000천원(32,500천원× 12개)
- 2012. 3. 22. 민원접수
- 2012. 4. 12. 계약물품 납품
 - (4. 16. 특정감사 실시로 격리/봉인)

6. 감사실시 주요 진행경위

일정	주요내용	비고
4. 16.(월)	- 특정감사 실시계획 통보 - 시제품 등 현물 확인 - 구매납품(12대) 격리 및 봉인	
4. 17.(화)	- 낙찰업체 방문 및 연구소장 면담	
4. 19.(목)	- 민원인 진행현황 통보(유선)	
4. 23.(월)	- 관계자 면담 및 질문서 발송	
4. 25.(화)	- 질문/답변서 접수	
4. 26.(목)	- 감사일정 변경	
4. 27.(금)	- 자재팀장 면담	
4. 30.(월)	-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관계자 면담 - 중간보고	
7. 2.(월)	- 감사결과 보고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결과 미반영)	

II. 감사결과

1. 구매계획의 부적정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선임연구원 000, 선임연구원 000, 실장 000는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매목적 및 구매예정 물품의 소요량(실소요량+예비수량)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확정하여 결재권자가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2012년 2월 15일 수립·확정한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12대의 확충계획」에는 예비수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2011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작된 4대를 구매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
- 그 결과로 핵안보정상회의 중 총 16대의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이 확보 되었다고 하나, 실제 투입된 장비는 9대 이므로 국가적 중요행사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감안하더라도 추가예산이 과다 계상된 요인이 있음을 확인함.

2. 직무태만 및 업무 협조체제 미흡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연구원 000, 실장 000는 2월 15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건으로 의사결정 등 행정소요가 없는 실장 전결처리 사항을 4일이 경과한 2월 20일 구매요구서에 결재하고, 구매요구 부서로 발송하였으며, 동 구매계획 건은 특정 일자에 사용 및 목적 등으로 아주 중요하고, 긴급함을 고려하면 추진일정, 구매방법, 구매추진 등에 관하여 구매담당 부서와 상호간 충분한 협의 및 협조체제로 추진·처리함이 통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나,
- 발주부서에서는 구매요구서 발송을 전후하여 구매담당부서와 동 건 관련하여 구매물품의 중요성, 낙찰자 결정방법, 납품시기 등에 관하여 구매담당 부서의 자문이나 협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서 간 업무추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 자재팀 책임기술원 000, 팀장 000은 2월 20일 발주부서에서 발송된 구매요구서를 4일이 경과한 2월 24일에 접수하였고, 구매요구서에 핵안보정상회의(3월 26일) 개최시 사용 될 제품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한 구매절차, 계약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등) 없이 10일 경과한 3월 5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 입찰공고시 핵안보정상회의 시 사용될 제품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시방서 만을 검토·감안하여 통상적인 제작품의 구매·조달 제품으로 간주, 납품기일을 계약체결 후 30일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최종 낙찰업체와 계약기간을 계약체결 후 30일인 3월 14일부터 4월12일까지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였음.(납품완료 일자 : 4월 12일)
- 입찰집행관인 자재팀 책임기술원 000는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 입찰서의 납품기간 기재일자인 '3월 20일'을 계약체결시 반영하여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나, 구매예정 제품이 핵안보정상회의 전 납품이 되지 않아도 행사지원에 문제가 없는 점, 당초 입찰공고(계약체결 후 30일), 민원발생 예측 등을 고려하여 낙찰업체의 입찰서 기재일자(3월 20일)를 반영하지 않고 당초 입찰공고에 정한 납품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 자재팀장 000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구매물품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시 사용되도록 납품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 구매·조달 예정 제품 외에 핵안보정상회의에 투입될 제품의 확보방안을 발주부서에서 확인(3. 13.)하고, 민원발생 등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종료 일자에 맞추어 납품할 것을 권고하였음.

3. 구매계획 변경 불이행 및 보고의무 미준수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연구원 000, 선임연구원 000, 실장 000 그리고 자재팀장 000은 2012년 3월 13일 또는 그 이전 동 건의 구매조달 과정에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입찰등록업체 중 한 업체인 '알에스아이'사로부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직·간접적으로 듣는 등 민원발생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시 활용목적으로 구매 추진 중인 보행자 방사능탐지시스템 12대가 회의 개최 일자인 2012년 3월 26일 이전에 납품이 되지 않아도 행사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자에 보고 및 대응방안을 취하지 않았음.
- ※ 실제 2012년 3월 26일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지원에는 시제품 4대와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 2012년 1~2월경 제작하여 보유중인 5대를 임차하여 총 9대를 투입·활용하였으며, 당초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시에 투입·활용 목적으로 구매 예정제품 12대는 핵안보정상회의 일자(3. 26.)가 경과한 2012년 4월 12일에 납품되었음.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연구원 000, 선임연구원 000, 실장 000는 낙찰

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이 보유 중인 제품 5대를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 임차하여 사용하였음.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연구원 000, 선임연구원 000, 실장 000, 자재팀장 000은 구매조달 예정 제품의 납품기간을 당초 입찰공고에 정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4월 12일)과 달리 핵안보정상회의(3월 26일) 이전에 반드시 납품 할 것으로 민원인이 인식하도록 주지하여 민원인은 입찰등록을 마쳤으나, 투찰을 하지 않고 부정당한 입찰 등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음.

4. 자산의 임의 반출 및 미등재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실장 000(현 원전주재원), 선임연구원 000, 선임연구원 000은 “ICX사 303.1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을 국가주요행사 방사능테러 대응 방호기술지원 시 활용 및 동일 목적의 검출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분석”을 위하여 2011년 5월 30일 구매계획을 승인 받아 2011년 6월 1일 구매 요청하여 2011년 8월 22일(자산인식/등록일자) 취득한 “ICX사 303.1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을 2011년 9월말에서 10월초, 2011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위탁연구기관인 고려대학교 등에 2회에 걸쳐 임의로 반출하였음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실장 000(현 원전주재원)은 위탁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한 시스템 성능평가 및 검증 책임은 위탁연구기관에 있음에도 “국가주요행사 방사능테러 대응 방호기술지원 시 활용 및 동일 목적의 검출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분석” 을 목적으로 취득한 “ICX사 303.1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 을 위탁기관인 고려대학교에 임의 반출하여 위탁연구기관에서 자체 조달하여야 할 검증용 시스템의 구매(취득) 비용을 절감케 하였으며, 우리 원의 자산을 댓가 없이 임의로 임대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주관연구책임자인 000과 참여자 000이 각각 대표자와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낙찰업체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 2011년 10월 9월말에서 10월초에 “ICX사 303.1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 을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위탁연구과제 수행 중 동 제품이 모

방불법복제 될 수 있는 개연성 있음.

- ◆ 이로 인하여, 모방불법복제 의구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였음.
- 위탁연구비 100,000천원이 투입되어 201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수행한 위탁연구결과물인 시제품 4set를 2012년 4월 16일 현재 자산 인식(등록)을 하지 않았음.

5. 구매계획의 사전 누설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실장 000(현 원전주재원), 선임연구원 000, 연구원 000은 인원용 방사성물질 탐지 시스템 개발 및 검증에 관한 위탁연구과제 수행중인 2011. 12월 말 경에 보행자 방사성물질 검색을 위한 시스템을 핵안보정상회의 간 구매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 및 위탁과제 수행기관인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알려주었으며,
- 발주금액 추정을 위하여 견적서를 징구함에 있어 2011년 8월 동일(유사) 제품의 납품실적이 있는 (주)지앤지래드콘의 견적을 우선 받는 것이 통상적이나,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의 단일견적으로 발주금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하여 구매계획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 사전 누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6. 위탁연구과제 결과물 및 물품공급계약 진행 관리 부적정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는 아래표의 연구결과물을 우리 원의 승인 없이 활용·사용하여 2012년 1~2월 경 5대를 제작하여 보유함은 물론, 동 제품을 2012년 3월 14일 우리 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단가 32,500천원, 총 162,500천원)하고 4월 12일 납품하였음.

- 과 제 명 : 인원용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 개발 및 검증
- 수행기간 : 2011. 8. 1. ~ 12.31.(연구비 : 100,000천원)
- 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 참여기관 : 한양대학교
- 참여연구원 : 000(과제책임자) 등 8명
- ※ 사업책임자 :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장 000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실장 000, 실장 000, 선임연구원 000, 연구원 000은 연구결과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는 누구도 활용·사용할 수 없도

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 연구결과물을 활용·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동 제품의 물품공급계약을 우리 원과 체결 및 추가제작, 납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탁연구과제 결과물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실장 000(연구책임자)은 위탁연구과제의 주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등이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이익을 실현할 개연성이 있는 사업체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낙찰업체)의 대표 또는 연구소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위탁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연구결과물의 임의사용에 관하여 방치하였음.
- 위탁연구용역 최종연구결과물(연구보고서 및 시제품)의 평가, 자산등재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최종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시제품은 위탁연구과제 종료일을 경과하여 최종연구보고서와 별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Ⅲ. 개선 및 건의사항

1. 위탁연구 및 기술용역 관리 개선

- 위탁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은 관계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특정감사 관련 위탁연구용역의 최종연구결과물(연구보고서 및 시제품)은 평가절차, 자산등재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최종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시제품은 연구개발 종료일을 경과하여 최종연구보고서와는 별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하였음.
- 따라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연구 및 기술용역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증 및 사후관리에 합당한 절차 이행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 됨

2.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소통강화

- 관련부서는 특정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규정의 정확한 이해와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간 및 부서 내의 원활한 업무협조, 또한 공직자로서 최선의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면, 적법하면서 원만한 업무처리로 민원발생 등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임.
- 따라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

수행 스킬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며, 업무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강화가 필요함

IV. 후속조치

1. 감사결과 통보 및 유관기관 보고 등

가. 결과통보 및 시정 등 요구

- 원장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
단,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나. 결과보고 : 이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 특정감사 종료 후 1월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에 보고

다. 민원회신(최종)

2. 연구결과물의 임의사용(소유권침해) 등에 따른 행정 조치

-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대표 000)은 위탁연구과제(II-6. 표 참조)에 참여자로 습득한 연구결과물을 우리 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2012년 1~2월 경 『보행자 방사능탐지시스템 5대』를 생산 하였고, 동 제품의 물품공급 계약을 2012년 3월 14일 우리 원과 체결(단가 32,500천원, 총 162,500천원)하여 같은 해 4월 12일 납품 완료하였음

※ 납품된 제품은 모방불법 복제 등 민원이 발생하여 2012년 7월 2일 현재 기술검수를 유보하고 있음

- 또한,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최한 “2012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에 동 사의 전시부스에 “보행자 방사능탐지시스템”을 전시하면서 KINS 로고를 부착하여 전시한 바 있음.

- 연구관리기본요령 제15조(연구사업 결과물 등의 소유권) ① 연구사업참여자(이하 “참여 자”라 한다)가 연구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생산한 지적재산권이나 시작품 등은 관련법령 또는 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기술원의 소유로 한다.
- 위탁연구개발협약서 제15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을”은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의 판권 및 본 연구에서 취득한 지적소유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 보안서약서 제1호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처분요구서

1. 총괄

관리 번호	처분 요구	관련자		지적사항
		소속	직급/성명	
1/5	징계	방사선비상 보안대책실	선임연구원 000	① 구매계획의 부적정 ② 직무태만, 업무협조 미흡 ③ 자산의 임의 반출 및 타인 자산의 임의사용 ④ 구매계획 정보제공 ⑤ 위탁연구과제 결과물 관리 부적정 ⑥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 시킴
			선임연구원 000	
2/5	징계	방사선비상 보안대책실장	책임연구원 000	① 구매계획의 부적정 ② 직무태만, 업무협조 미흡 ③ 구매계획 변경 불이행 ④ 타인 자산의 임의사용 ⑤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 시킴
3/5	경고	방사선비상 보안대책실장	책임연구원 000	① 자산의 임의 반출 및 위탁연구과제 수 행기관에 편의 제공 ② 위탁연구과제 결과물 관리 부적정 ③ 구매계획의 누설 ④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 시킴
4/5	경고	자재팀장	책임행정원 000	① 직무태만 및 업무협조 미흡 ②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③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 시킴
		자재팀	책임기술원 000	
5/5	시정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자재팀 예산팀		① 물품공급계약 변경 ② 위탁연구결과물의 평가, 자산등재 및 지체상금의 부과

주) 관련자는 특정감사 대상업무 수행 당시의 소속 및 직급 임.

2. 개별 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관리 번호	1/5	관련자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처분종류
			선임연구원 000	징계
			선임연구원 000	
<p>1. 제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구매계획의 부적정 ② 직무태만, 업무협조 미흡 ③ KINS 자산의 임의 반출 및 타인 자산의 임의사용 ④ 구매계획 정보제공 ⑤ 위탁연구과제 결과물 관리 부적정 ⑥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 시킴 				
<p>2.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선임연구원 000, 선임연구원 000은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매목적 및 구매예정 물품의 소요량(실소요량 + 예비수량)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확정하여 결재권자가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2012년 2월 15일 수립·확정한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12대의 확충계획」에는 예비수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2011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작된 4대를 구매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 □ 그 결과로 핵안보정상회의 중 총 16대의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이 확보 되었다고 하나, 실제 투입된 장비는 9대 이므로 국가적 중요행사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감안하더라도 추가예산이 과다 계상된 요인이 있음을 확인함. □ 2012년 3월 26일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12대의 확충계획」을 2월 15일 최종결재를 득하고, 2월 20일 구매·조달을 구매담당부서(자재팀)에 의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동 구매·조달 건은 특정 일자에 사용 및 목적 등이 아주 중요하고, 긴급함을 고려하면 추진일정, 구매방법, 구매추진 등에 관하여 구매담당 부서와 상호간 충분한 협의 및 협조체제로 추진·처리함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 구매·조달 계획수립 및 요청을 전·후하여 구매담당부서와 동 건 관련하여 구매물품의 중요성, 낙찰자 결정방법, 납품시기 등에 관하여 구매담당 부서의 자문이나 협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서 간 업무추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2년 3월 13일 또는 그 이전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의 구매조달 과정에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입찰등록업체 중 한 업체인 ‘알에스아이’사로부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직·간접적으로 듣는 등 민원발생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시 활용목적으로 구매추진 중인 보행자 방사능탐지시스템 12대가 회의 개최 일자인 2012년 3월 26일 이전에 납품이 되지 않아도 행사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자에 보고 및 대응방안을 취하지 않았음.
- ※ 실제 2012년 3월 26일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지원에는 시제품 4대와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 2012년 1~2월경 제작하여 보유중인 5대를 임의로 임차하여 총 9대를 투입·활용하였으며, 당초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시에 투입·활용 목적으로 구매(취득) 예정 제품 12대는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이 경과한 2012년 4월 12일에 납품되었음.
-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이 2012년 1월 중 제작하여 보유 중인 제품 5대를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음.
- 2012년 3월 13일 구매조달 예정 제품의 납품기간을 당초 입찰공고에 정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4월 12일)과 달리 핵안보정상회의(3월 26일) 이전에 반드시 납품 할 것으로 민원인이 인식하도록 주지하여 민원인은 입찰등록을 마쳤으나, 투찰을 하지 않고 부정당한 입찰 등 의혹이 있으므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으로 민원발생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대응 및 민원발생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수행중인 2011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 “ICX사 303.1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을 국가주요행사 방사능테러 대응 방호기술지원 시 활용 및 동일 목적의 검출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분석”을 위하여 2011년 5월 30일 구매계획을 승인 받아 2011년 8월 22일(자산인식/등록일자) 취득한 “ICX사 303.1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을 2011년 9월말에서 10월초, 2011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위탁연구기관인 고려대학교 등에 2회에 걸쳐 임의로 반출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한 시스템 성능평가 및 검증 책임은 위탁연구기관에 있음에도 “국가주요행사 방사능테러 대응 방호기술지원 시 활용 및 동일 목적의 검출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분석”을 목적으로 취득한 “ICX사 303.1 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을 위탁기관인 고려대학교에 임의 반출하여 위탁연구기관에서 자체 조달하여야 할 검증용 시스템의 구매(취득) 비용을 절감케 하였으며, 우리 원의 자산을 댓가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음.
- 이로 인하여, 민원인은 안전기술원에서 밀착업체에 자사의 제품을 불법 유통시켜 모방 불법 복제케 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므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수행중인 2011. 12월 말 경에 연구결과물인 보행자 방사성물질 검색을 위한 시스템은 핵안보정상회의 간 구매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 및 위탁과제 수행기관인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알려주었으며,
- 발주금액 추정을 위하여 견적서를 징구함에 있어 2011년 8월 동일(유사) 제품의 납품실적이 있는 (주)지앤지래드콘의 견적을 우선 받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의 단일견적으로 발주금액을 산정하는 등으로 하여 구매계획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 사전 누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은 적법한 절차 없이는 누구도 활용·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2012년 1~2월 경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5대를 제작하여 보유함은 물론, 동 제품을 2012년 3월 14일 우리 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단가 32,500천원, 총 162,500천원)하고 4월 12일 납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방치하였으며, 위탁연구과제 결과물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위탁연구비 100,000천원이 투입되어 201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수행한 위탁연구결과물인 시제품 4set를 2012년 4월 16일 현재 자산인식(등록)을 하지 않았음.

< 감사규정 >

제20조(시정요구 등)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통보 : 안전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징계나 시정 등 선택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개선 : 규정 또는 제도상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안으로 규정상 또는 제도상 개선을 요할 경우

- 3. 주의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경미한 경우
- 4. 시정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 6. 경고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지만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8. 징계 :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사규정 >

제15조(복무의무) ①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예절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⑤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무단히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퇴직후에도 또한 같다.

< 자재관계시행요령 >

제59조(임차) ①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책임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을 임차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임차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0조(반출) 안전기술원 외부로 반출되는 모든 물품(검사불합격품, 처분용품, 사용 장소변경 또는 수리 등에 의한 일반물품, 시공자의 잉여재 및 공기구)의 반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50조(연구비 취득자산 및 부외자산의 회계처리) ②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연구비 취득자산을 고정자산 계정에 계상할 때는 그 취득원가를 연구사업원가총액에서 차감 처리한다.

제51조(부외자산의 인식) ① 증여 또는 원내제작 등 구매거래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산이 발생한 부서의 장은 발생시점 또는 매년말(연구사업은 사업종료후 1월 이내) 증빙서를 첨부하여 자산관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은 부외자산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자산으로 결정된 부외자산을 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실사용부서장 및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

제6조(규정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항상 안전기술원의 사명과 임무를 숙지하고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합리적 사고) 임직원은 건전한 상식의 기반위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부당이용 및 유출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 자료, 사업자의 지적 재산권 및 개인에 대한 정보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부패행위의 고발 및 신고지침 >

제2조(부패행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안전기술원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안전기술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안전기술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연구관리기본요령 >

제15조(연구사업 결과물 등의 소유권) ① 연구사업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연구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생산한 지적재산권이나 시제품 등은 관련법령 또는 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기술원의 소유로 한다.

< 위탁연구개발협약서 >

제15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을”은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의 판권 및 본 연구에서 취득한 지적소유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 보안서약서 >

제1호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연구보안관리지침 >

제6조(분류기준) ①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및 연구사업 출연처의 요구에 의해 보안과제로 확정된 연구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연구과제의 특성 및 과제수행의 효율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 및 사업자의 인허가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

3. 국산화 대상 기술로써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③ 연구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한다.

제12조(보안사고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정보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기재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장 및 보안주관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보안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 관련내용을 즉시 해당 전문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제2항에서 명시한 기관 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보안주관부서장은 연구관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내용을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보안사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여 처리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관리 번호	2/5	관련자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장 책임연구원 000	처분종류 징계
----------	-----	-----	--------------------------	------------

1. 제목

- ① 구매계획의 부적정
- ② 직무태만, 업무협조 미흡
- ③ 구매계획 변경 불이행
- ④ 타인 자산의 임의사용
- ⑤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 시킴

2. 내용

- 방사능비상보안대책실 책임연구원 000는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매목적 및 구매예정 물품의 소요량(실소요량 + 예비수량)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확정하여 결재권자가 구매계획의 적정성을 판단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2012년 2월 15일 수립·확정한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12대의 확충계획」에는 예비수량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또한 2011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위탁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작된 4대를 구매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
- 그 결과로 핵안보정상회의 중 총 16대의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이 확보 되었다고 하나, 실제 투입된 장비는 9대 이므로 국가적 중요행사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감안하더라도 추가예산이 과다 계상된 요인이 있음을 확인함.
- 2012년 3월 26일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12대의 확충계획」을 2월 15일 최종결재를 득하고, 2월 20일 구매·조달을 구매담당부서(자재팀)에 의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동 구매·조달 건은 특정 일자에 사용 및 목적 등이 아주 중요하고, 긴급함을 고려하면 추진일정, 구매방법, 구매추진 등에 관하여 구매담당 부서와 상호간 충분한 협의 및 협조체제로 추진·처리함이 통상적인 것이나,
- 구매·조달 계획수립 및 요청을 전·후하여 구매담당부서와 동 건 관련하여 구매물품의 중요성, 낙찰자 결정방법, 납품시기 등에 관하여 구매담당 부서의 자문이나 협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서 간 업무추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2년 3월 13일 또는 그 이전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의 구매조달 과정에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입찰등록업체 중 한 업체인 ‘알에스아이’사로부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직·간접적으로 듣는 등 민원발생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시 활용목적으로 구매추진 중인 보행자 방사능탐지시스템 12대가 회의 개최 일자인 2012년 3월 26일 이전에 납품이 되지 않아도 행사지원에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급자에 보고 및 대응방안을 취하지 않았음.
- ※ 실제 2012년 3월 26일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지원에는 시제품 4대와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 2012년 1~2월경 제작하여 보유중인 5대를 임의로 임차하여 총 9대를 투입·활용하였으며, 당초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시에 투입·활용 목적으로 구매(취득) 예정 제품 12대는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이 경과한 2012년 4월 12일에 납품되었음.
-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이 2012년 1월 중 제작하여 보유 중인 제품 5대를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음.
- 2012년 3월 13일 구매조달 예정 제품의 납품기간을 당초 입찰공고에 정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4월 12일)과 달리 핵안보정상회의(3월 26일) 이전에 반드시 납품 할 것으로 민원인이 인식하도록 주지하여 민원인은 입찰등록을 마쳤으나, 투찰을 하지 않고 부정당한 입찰 등 의혹이 있으므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으로 민원발생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대응 및 민원발생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은 적법한 절차 없이는 누구도 활용·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2012년 1~2월 경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5대를 제작하여 보유함은 물론, 동 제품을 2012년 3월 14일 우리 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단가 32,500천원, 총 162,500천원)하고 4월 12일 납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방기하거나 배임하였으며, 위탁연구과제 결과물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위탁연구비 100,000천원이 투입되어 2011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수행한 위탁연구결과물인 시제품 4set를 2012년 4월 16일 현재 자산인식(등록)을 하지 않았음.

< 감사규정 >

제20조(시정요구 등)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통보 : 안전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징계나 시정 등 선택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개선 : 규정 또는 제도상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안으로 규정상 또는 제도상 개선을 요할 경우
3. 주의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경미한 경우
4. 시정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6. 경고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지만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징계 :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사규정 >

제15조(복무의무) ①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예절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자재관계시행요령 >

제59조(임차) ①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책임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을 임차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임차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50조(연구비 취득자산 및 부외자산의 회계처리) ②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연구비 취득자산을 고정자산 계정에 계상할 때는 그 취득원가를 연구사업원가총액에서 차감 처리한다.

제51조(부외자산의 인식) ① 증여 또는 원내제작 등 구매거래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산이 발생한 부서의 장은 발생시점 또는 매년말(연구사업은 사업종료후 1월 이내) 증빙서를 첨부하여 자산관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은 부외자산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자산으로 결정된 부외자산을 자산관리 대장에 기록한 후 실사용부서장 및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

제6조(규정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항상 안전기술원의 사명과 임무를 숙지하고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합리적 사고) 임직원은 건전한 상식의 기반위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부패행위의 고발 및 신고지침 >

제2조(부패행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안전기술원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안전기술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안전기술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관리기본요령 >

제15조(연구사업 결과물 등의 소유권) ① 연구사업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연구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생산한 지적재산권이나 시제품 등은 관련법령 또는 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기술원의 소유로 한다.

< 위탁연구개발협약서 >

제15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을”은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의 판권 및 본 연구에서 취득한 지적소유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 보안서약서 >

제1호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관리 번호	3/5	관련자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장 (과제/사업 책임자)	처분종류
			책임연구원 000	경고

1. 제목

- ① 자산의 임의 반출 및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에 편의 제공
- ② 위탁연구과제 결과물 관리 부적정
- ③ 구매계획의 누설
- ④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 시킴

2. 내용

- 위탁연구과제 수행중인 2011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사이 “ICX사 303.1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을 국가주요행사 방사능테러 대응 방호기술지원 시 활용 및 동일 목적의 검출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분석”을 위하여 2011년 5월 30일 구매계획을 승인 받아 2011년 8월 22일(자산인식/등록일자) 취득한 “ICX사 303.1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을 2011년 9월말에서 10월초, 2011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위탁연구기관인 고려대학교 등에 2회에 걸쳐 임의로 반출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결과물에 대한 시스템 성능평가 및 검증 책임은 위탁연구기관에 있음에도 “국가주요행사 방사능테러 대응 방호기술지원 시 활용 및 동일 목적의 검출기 국산화 개발을 위한 분석”을 목적으로 취득한 “ICX사 303.1 모델 Stride 형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을 위탁기관인 고려대학교에 임의 반출하여 위탁연구기관에서 자체 조달하여야 할 검증용 시스템의 구매(취득) 비용을 절감케 하였으며, 우리 원의 자산을 댓가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음.
- 이로 인하여, 민원인은 안전기술원에서 밀착업체에 자사의 제품을 불법 유출시켜 모방 불법 복제케 하였다는 민원을 제기하므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수행중인 2011. 12월 말 경에 연구결과물인 보행자 방사성물질 검색을 위한 시스템은 핵안보정상회의 간 구매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 및 위탁과제 수행기관인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알려주어 구매계획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 사전 누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위탁연구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등이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이익을 실현할 개연성이 있는 사업체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낙찰업체)의 대표 또는 연구소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위탁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연구결과물의 임의사용에 관하여 방치하였음.
- 위탁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은 적법한 절차 없이는 누구도 활용·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에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2012년 1~2월 경 보행자 방사능탐지 시스템 5대를 제작하여 보유함은 물론, 동 제품을 2012년 3월 14일 우리 원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단가 32,500천원, 총 162,500천원)하고 4월 12일 납품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방치하였으며, 위탁연구과제 결과물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위탁연구용역의 최종연구결과물(연구보고서 및 시제품)에 대하여 평가 및 자산등재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최종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시제품은 연구개발 종료일을 경과하여 최종연구보고서와는 별건으로 제출되었음에도 지체상금의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감사규정 >

제20조(시정요구 등)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통보 : 안전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징계나 시정 등 선택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개선 : 규정 또는 제도상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안으로 규정상 또는 제도상 개선을 요할 경우
3. 주의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경미한 경우
4. 시정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6. 경고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지만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징계 :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사규정 >

제15조(복무의무) ①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예절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⑤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무단히 타에 누설하

여서는 아니되며, 퇴직후에도 또한 같다.

< 자재관계시행요령 >

제60조(반출) 안전기술원 외부로 반출되는 모든 물품(검사불합격품, 처분용품, 사용 장소변경 또는 수리 등에 의한 일반물품, 시공자의 잉여재 및 공기구)의 반출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50조(연구비 취득자산 및 부외자산의 회계처리) ② 연구수행을 통하여 취득하는 연구비 취득자산을 고정자산 계정에 계상할 때는 그 취득원가를 연구사업원가총액에서 차감 처리한다.

제51조(부외자산의 인식) ① 증여 또는 원내제작 등 구매거래에 반영되지 아니한 자산이 발생한 부서의 장은 발생시점 또는 매년말(연구사업은 사업종료후 1월 이내) 증빙서를 첨부하여 자산관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은 부외자산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자산으로 결정된 부외자산을 자산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실사용부서장 및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

제6조(규정준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항상 안전기술원의 사명과 임무를 숙지하고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합리적 사고) 임직원은 건전한 상식의 기반위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부당이용 및 유출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 자료, 사업자의 지적 재산권 및 개인에 대한 정보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부패행위의 고발 및 신고지침 >

제2조(부패행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안전기술원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안전기술원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안전기술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연구관리기본요령 >

제15조(연구사업 결과물 등의 소유권) ① 연구사업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

다)가 연구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생산한 지적재산권이나 시작품 등은 관련법령 또는 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기술원의 소유로 한다.

< 위탁연구개발협약서 >

제15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을”은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의 판권 및 본 연구에서 취득한 지적소유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갑”은 “을”의 연구개발 수행기간중 중간진도 점검등 필요시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발표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연구개발 종료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초안검토 후 “갑”의 명의 보고서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10부와 전자파일(CD)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2항의 최종보고서 제출이행기일이 지체될 경우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협약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 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을”의 연구개발 결과를 “갑”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을”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불량” 이하로 평가될 경우에는, 향후 수행되는 “갑”의 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보안서약서 >

제1호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연구보안관리지침 >

제6조(분류기준) ①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및 연구사업 출연처의 요구에 의해 보안과제로 확정된 연구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연구과제의 특성 및 과제수행의 효율성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 및 사업자의 인허가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

3. 국산화 대상 기술로써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③ 연구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한다.

제12조(보안사고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정보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기재하여 연구관리담당부서장 및 보안주관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보안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 관련내용을 즉시 해당 전문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제2항에서 명시한 기관 외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보안주관부서장은 연구관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내용을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보안사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여 처리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관리 번호	4/5	관련자	자재팀	처분종류
			책임행정원 000 책임기술원 000	경고

1. 제목

- ① 직무태만 및 업무협조 미흡
- ②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사후관리 부적정
- ③ 기관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 시킴

2. 내용

- 2012년 3월 26일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실전배치 및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발주부서의 위탁연구결과물에 근거하여 작성한 제품사양서(시방서)를 첨부하여 2012년 2월 20일 구매·조달을 요청한 장비에 대하여 자재관계시행요령 제29조(수의계약대상) 등 계약방법 및 사용일자(2012. 3. 26, 핵안보정상회의)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 등) 없이 납품기일을 계약체결 후 30일 등으로 정하여 3월 5일 일반경쟁 입찰공고를 하여 3월 13일 입찰을 집행하였으며,
- 입찰 집행결과 최종 낙찰업체와 계약기간을 "계약체결 후 30일인 3월 14일부터 4월12일까지"로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매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였음.(납품완료 일자 : 4월 12일)
- 입찰집행 집행과정에서 낙찰업체인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 응찰자가 입찰서에 납품기간을 입찰공고에 정한 낙찰일로부터 30일과 달리 특정일자인 3월 20일로 기재한 것을 계약체결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나, 구매예정 제품이 핵안보 정상회의 전 납품이 되지 않아도 행사지원에 문제가 없는 점, 당초 입찰공고(계약체결 후 30일), 민원발생 예측 등을 고려하여 낙찰업체의 입찰서 특정일자를 반영하지 않고 공고에 정한 납품기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2년 3월 13일 구매조달 예정 제품의 납품기간을 당초 입찰공고에 정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4월 12일)과 달리 핵안보정상회의(3월 26일) 이전에 반드시 납품 할 것으로 민원인이 인식하도록 주지하여 민원인은 입찰등록을 마쳤으나, 투찰을 하지 않고 부정당한 입찰 등 의혹이 있으므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으로 민원발생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적절한 대응 및 민원발생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음.

< 감사규정 >

제20조(시정요구 등)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통보 : 안전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거나, 징계나 시정 등 선택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개선 : 규정 또는 제도상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안으로 규정상 또는 제도상 개선을 요할 경우
3. 주의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경미한 경우
4. 시정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6. 경고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불가능 하지만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8. 징계 :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사규정 >

제15조(복무의무) ①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 ④ 직원은 안전기술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건강과 수양에 유의하여 예절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자재관계시행요령 >

제29조(수의회약의 대상) 계약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회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공사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회에서 수의회약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11.10.31)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경쟁할 수 없는 경우

< 임직원행동강령 >

제8조(합리적 사고) 임직원은 건전한 상식의 기반위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관리 번호	5/5	관련자	방사선비상보안대책실 자재팀 예산팀	처분종류
				시정

1. 제목

- ① 물품공급계약 변경 등 연구결과물 임의활용에 대한 시정
- ② 위탁연구결과물의 평가, 자산등재 및 지체상금의 부과

2. 내용

가. 위탁연구과제 최종결과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 사용하여 제작하고, 우리원과 동 제품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 2012년 4월 12일 납품한 다음의 물품공급계약 건에 관하여 계약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건명 : 보행자 방사성물질 탐지시스템 5개(12개 중 5개)
- 계약금액 : 162,500천원(32,500,000원/개 × 5개)
- 계약기간 : 2012. 3. 14. ~4. 12. / 4.12. 납품완료 후 기술검수 유보 중
- 계약상대자 : (주)뉴케어메디컬시스템(대표 정진훈)
- ※ 세부내역 : 물품공급계약서 참조

나. 위탁연구용역의 최종연구결과물(연구보고서 및 시제품)에 대하여 평가 및 자산등재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연구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시제품은 연구개발 종료일을 경과하여 최종연구보고서와는 별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자산등재
- 최종결과물의 최종제출일자를 확인 하고, 지연일수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 감사규정 >

제20조(시정요구 등)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4. 시정 : 규정을 위배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

< 연구관리기본요령 >

제15조(연구사업 결과물 등의 소유권) ① 연구사업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가 연구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생산한 지적재산권이나 시제품 등은 관련 법령 또는 협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기술원의 소유로 한다.

< 위탁연구개발협약서 >

제15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을”은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의 판권 및 본 연구에서 취득한 지적소유권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5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갑”은 “을”의 연구개발 수행기간중 중간진도 점검등 필요시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발표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연구개발 종료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 초안검토 후 “갑”의 명의 보고서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연구개발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 10부와 전자파일(CD)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상기2항의 최종보고서 제출이행기일이 지체될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협약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을”의 연구개발 결과를 “갑”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을”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② 상기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불량” 이하로 평가될 경우에는, 향후 수행되는 “갑”의 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보안서약서 >

제1호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의 허락 없이는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